

=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2. 4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2. 5

다. 상 정 일 자 :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08. 2.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최삼립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소규모 통·반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획정기준을 조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반장의 선출방법 개선과 통장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 제한하고 통장이 동 행정예 비협조적이거나 업무태만으로 통장 업무수행에 소홀히 할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통·반의 획정기준 조정(안 제3조)
 - 반은 20세대 내지 100세대로 구성하는 것을 “20세대 이상” 으로, 통은 3개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5개반 이상” 으로 조정
- 반장의 선출방법 변경(안 제5조제2항제2호)
 - 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주민 및 통장추천에 의해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
- 통장 임기 제한(안 제5조제2항제3호)
 -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가능, 단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반장 해촉사유 추가(안 제5조제4항제5호)
 - 통장이 동 행정예 비협조적이거나 임무소홀, 업무태만일 경우 동장이 직권

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사유를 추가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개정안은

통·반의 확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통·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장의 연임규정 개선과 동 행정예 비협조적인 통·반장의 해촉근거를 추가하는 등으로 통·반장 활동의 활력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나. 통·반의 확정기준 조정은

현재 1개통의 반수는 최소 3개반에서 최대 10개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5개반 이상으로 조정하고, 1개반내 세대수는 최소 20세대에서 최대100세대로 되어 있는 것을 20세대 이상으로 상한선을 철폐한 것은 대규모 APT건립 등으로 집단화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거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통·반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통·반장 수의 감축으로 이어져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반장의 선출방법 변경은

반상회 등 반원 모임이 침체되고, 반장직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떨어져 반장을 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 또는 통장의 추천

에 의하여 위촉토록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은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됨.

라. 통장의 임기에 연임제한을 둔 것은

현재 통장의 임기는 한번 위촉되면 연령 제한을 받는 65세까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 장기간 연임에 따른 의욕저하로 활동성이 정체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통장의 임기를 개정안대로 제한할 시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6년이 경과된 후에는 다수의 통장을 동일 년도 내에 교체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통·반장의 해촉사유에

「동 행정예 비협조적이거나 통·반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 라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통·반장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고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